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3 .

###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○지	96.0.0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	정당한 사유없이 1,2차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않음. 1차 출석통지:26.5.21. 2차 출석통지:26.5.29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86-4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6.23. ~ 2025.7.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미희(Tel. 031-799-27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